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2002-1

발의년월일 : 2002. 1. 29
제 안 자 : 자치행정위원회

1. 수 정 이 유

○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 일반장학생 선발 자격기준을 보완하여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선발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와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된 조례안으로,

○일반장학생의 자격요건중 저소득층 시민들이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조례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수정 주요 골자

○저소득층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하향조정 "우 평점 또는 80점이상인 자"를 "미 평점 또는 70점이상인 자, 단 대학생은 우 평점 또는 80점이상인 자"로 수정함.(안 제3조제2항)

○장학금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하고자 "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·민간단체·학교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 한다. 다만 김제시장학금 지급액 이하의 교내 장학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"를 "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·민간단체·학교로부터 김제시장학금 지급액 이하의 장학금을 받을 경우에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"로 수정함. (안 제3조제5항)

3. 따로 붙임

○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○수정안 조문 대비표

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2002-1

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2항중 "우 평점 또는 80점이상인 자"를 "미 평점 또는 70점이상인 자, 단 대학생은 우 평점 또는 80점이상인 자"로 하고, 동조제5항중 "제2항 내지 제4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·민간단체·학교로부터 장학금(수업료 지원 포함)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. 다만 김제시장학금 지급액 이하의 교내 장학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"를 "제2항 내지 제4항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·민간단체·학교로부터 김제시장학금 지급액 이하의 장학금(수업료 지원 포함)을 받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"로 한다.

수 정 안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장학생의 자격) ①(생략) ②일반장학금 장학생의 자격요건은 학업성적이 미 평점 또는 70점이상인 자로 하고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평정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. 1. ~ 5.(생략) ③ ~④(생략)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·민간단체·학교로부터 장학금(수업료 지원 포함)을 받는자는 제외한다. 〈단서 신설〉	제3조(장학생의 자격) ①(현행과 같음) ②---------- 우 평점 또는 80점이상인 자 ---------- . 1. ~ 5.(현행과 같음) ③ ~④(현행과 같음)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·민간단체·학교로부터 장학금(수업료 지원 포함)을 받는자는 제외한다. 다만 김제시장학금 지급액 이하의 교내 장학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.	제3조(장학생의 자격) ①(개정안과 같음) ②---------- 우 평점 또는 70점이상인 자, 단 대학생은 우 평점 또는 80점이상인 자 ---------- . 1. ~ 5.(개정안과 같음) ③ ~④(개정안과 같음)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·민간단체·학교로부터 김제시장학금 지급액 이하의 장학금(수업료 지원 포함)을 받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.

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002-1

제출년월일 : 2002. 1.
제 출 자 : 김제시장

1. 개정이유

○ 일반장학생 선발 자격기준을 보완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선발과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므로써 김제시 장학금 지원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○ 일반장학금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"학업성적 미 평점 또는 70점 이상인 자"에서 "학업성적 미 평점 또는 70점이상인 자, 단 대학생은 학업성적 우 평점 또는 80점이상인 자"로 조정함
(안 제3조제2항)

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· 민간단체 · 학교로부터 김제시 장학금 지급액이하의 장학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함(안 제3조제5항)

3. 참고사항

○ 김제시장학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

○ 입법예고 결과

○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(현행)

김제시조례 제 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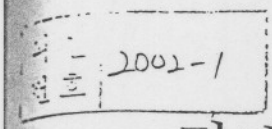

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중 "미 평점 또는 70점이상인 자"를 "미 평점 또는 70점이상인 자, 단 대학생은 우 평점 또는 80점이상인 자"로 하고,

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⑤제2항 내지 제4항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·민간단체·학교로부터 김제시 장학금 지급액이하의 장학금(수업료 지원 포함)을 받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장학생의 자격) ①(생략) ②일반장학금 장학생의 자격요건은 학업성적이 미 평점 또는 70점 이상인 자로 하고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평정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. 1. ~ 5. (생략) ③~④(생략)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·민간단체·학교로부터 장학금(수업료 지원 포함)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.	제3조(장학생의 자격) ①(현행과 같음) ②---------- -- 미 평점 또는70점이상인 자, 단 대학생은 우 평점 또는 80점 이상인 자 ---------- -----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③~④(현행과 같음)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·민간단체·학교로부터 김제시 장학금 지급액이하의 장학금(수업료지원 포함)을 받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.